경산 대임지구 제일풍경채 S-1BL 사전청약 공고

풍경채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이 공고문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위해 건설호수, 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격, 세대배정, 시공업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계약적으로 추정하여 안내하는 것이므로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및 단지의 주변 생활여건, 시공관련 사항 등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견본주택 운영에부 및 관련 유의사항 추가]
- 현장접수시 방문은 당사가 정한 시간대별 방문 예약제에 한하여 방문이 가능하며 방문 예약은 당사 홈페이지(www.dl-eil.co.kr)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해서 현장접수시 입장 인원 및 운영 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감염증 확산 상황에 따라 정부정책 등으로 방문이 제한될 경우, 당첨자 자격검증 시류제출 ·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정당 변동 시 개별 통보 예정)
- 현장접수시 본인은 당사 및 견본주택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감염예방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되거나 퇴장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발열검사 및 마스크 착용 후 입장 가능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예방장비에 불응할 경우
  - 방문인원 현황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 기타 지정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경산 대임지구 제일풍경채 S-1BL 분양 상담 전화(☎1533-4368) 및 홈페이지(www.dl-eil.co.kr)를 통해서도 청약 및 분양상담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니, 상담전화 폭주 및 문의자 편중으로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청약자의 입장을 충분히 참고 자료로서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상담자 본인의 모집공고를 통해 분양자격 등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가 마숙지 적신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모바일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가능	공공인증서를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건설임대 / 사전청약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장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사전청약 4년간 청약 제한 적용 대상자 안내
1. 2019년 1월 1일 이후 청약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사전청약 당첨자 및 같은 사업지에 거주하는 세대주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전청약 당첨자 및 같은 사업지에 거주하는 세대주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당첨자 발표일부터 4년
2. 2019년 1월 1일 이후 청약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사전청약 당첨자 및 같은 사업지에 거주하는 세대주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당첨자 발표일부터 4년
3. 2019년 1월 1일 이후 청약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사전청약 당첨자 및 같은 사업지에 거주하는 세대주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당첨자 발표일부터 4년
4. 2019년 1월 1일 이후 청약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사전청약 당첨자 및 같은 사업지에 거주하는 세대주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당첨자 발표일부터 4년
5. 2019년 1월 1일 이후 청약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사전청약 당첨자 및 같은 사업지에 거주하는 세대주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당첨자 발표일부터 4년
6. 2019년 1월 1일 이후 청약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사전청약 당첨자 및 같은 사업지에 거주하는 세대주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당첨자 발표일부터 4년
7. 2019년 1월 1일 이후 청약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사전청약 당첨자 및 같은 사업지에 거주하는 세대주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당첨자 발표일부터 4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2항제1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2항제2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청약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신청자 전부가 부적격 처리됩니다.(주택공급 신청자 및 본인이 불가하신 경우에만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방문접수)

■ 청약 신청한 세대원 전부가 당첨되어 주택소유자로 입주하는 경우 주택의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청약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신청자 전부가 부적격 처리됩니다.(청약통장 사용하는 경우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 충족 여부 확인 결과 및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평면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중 최소 1세대에 대하여 제공하며, 최종 주택형별 평면도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합니다.

■ 주택형별 세부 공급세대수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중 최소 1세대에 대하여 제공하며, 최종 주택형별 세부 공급세대수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합니다.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중 최소 1세대에 대하여 제공하며, 최종 주택형별